

99
|
02

연구보고서 99-02

인권정보자료실
Md.g.4

1999년
실업장애우 실태 보고서

김정렬 · 이태수 · 권선진 · 권유희 · 조문순



실업장애우실태보고서

인권정보자료실
Md.g.4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RIDRIK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삼성복지재단의 후원

본 연구는 삼성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의 목적과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높이기 위함이다. 연구의 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의 결과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진**
-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 이태수(현도사회복지대학 교수)
 - 권선진(평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권유경(장애인복지 통합모형연구모임)
 - 조문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간사)

이 보고서는 삼성복지재단의 지원으로 연구·제작되었습니다.

실업장애우 실태조사보고서를 펴내며

1997년 12월의 겨울을 강타한 외환위기는 '조국근대화'의 기치아래 외형적 고도경제 성장에 취한 한국민들에게 충격 이상의 고통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국가경제의 붕괴와 함께 그래도 가슴 한편에 키워왔던 '의지의 한국인'이란 자부심을 잃은 채 우울한 어깨와 움추린 모습 속에서 다가올 미래의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급격히 폭등한 환율, 사상 최고로 오른 금리, 절망적인 마이너스 성장. 그 속에서 국민생활의 급락을 가져오게 한 것은 급등하는 실업률과 그로 인해 대량으로 양산되는 실업자의 존재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도난 회사를 뒤로 하고 거리의 노숙자로 전락한 기업체 사장에서부터 어엿한 대기업의 회사원에서 강제 퇴직당한 가정들, 조그마한 영세 상을 거둬치우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들, 가출한 아내와 잃어버린 직장으로 자식을 보육시설에 맡기고 강소주로 비애를 달래는 실업자들.... 그리고 그들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가리워진 가족들의 고통들.....

바로 이러한 실업대란과 경제파국의 위기에서 우리 장애우의 고통의 족적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고도의 경제성장 속에서도 그 혜택을 별로 받지 못했던 장애우는 이러한 고통의 역사에서는 과연 얼마나 그 충격에 떨 것인가? 장애를 입지 않은 이들이 당하는 고통의 무게가 이렇진대 장애우에 대한 제대로된 안전망 하나 없는 우리 사회에서 이들은 어떤 실생활을 하며 어떤 생각을 지니고 또한 정부정책으로부터 얼마나 보호받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그들의 궤적을 추적하고 싶었던 것이 본 연구소에서 실태조사를 하게된 소박한 동기였습니다. 누구도 장애우의 고통을 좀더 정밀하게 좀더 가까이에서 찾아 보려고 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외환위기의 상처가 너무 깊어지기 전에 그리고 그들의 삶을 돌이킬 수 없는 절망으로 이끌어 버리기 전에 장애우의 문제를 만민에게 노출시키고 이를 정면으로 대응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것이 이 조사의 의도였습니다.

그리하여 연구진들은 설문지를 작성하고 전국으로 이를 배포하여 그 결과를 취합하고 분석한 뒤 1999년 5월 달에는 우선 공청회를 통하여 그 결과를 널리 알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촉구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이제 그 결과를 보완하고 다듬어 한 권의 책으로 남기려 합니다. 분명 우리 역

사의 일부였고 또한 한때의 현재였던 IMF 관리경제체제하의 장애우의 삶의 족적을 기록한 이 책은 단순한 기록의 차원을 넘어 장애우의 고통에 대한 생생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고 외환위기하의 고통이 완전히 치유되는 날이 온다하여도 이날에 대한 이 증거는 우리에게 불의 문자로 각인되어 우리를 깨우치고 한시라도 경각심을 놓치지 않게하는 각성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에 대한 기대가 한껏 부풀어지면서 더불어 사회일각에서는 IMF 시절의 고통은 다 잊은 듯 벌써 축제의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사회는 분명 1,000만명이 넘는 '신빈곤' 인구가 엄존하고 있고 190만명에 이르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대빈곤자, 15만의 결식아동과 10만의 결식노인, 그리고 6천명의 노숙자가 실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보호의 대상자도, 공공근로사업의 참여자도, 장애우대부사업의 대상자도 될 수 없는 가운데 마땅히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방도를 찾기 어려워하는 수많은 실업장애우가 본 조사보고서 내용에서와 같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장애우들의 고통을 불식시키기 위해 우린 아직 축배의 잔을 들 수 없다는 인식을 국민 모두에게 줄 수 있을 때 이 책자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당국이 이들 장애우의 현실을 정확히 판단하고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업장애우에 게 눈높이를 맞춘 진정한 장애우정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실태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에 참여한 연구진이 여기에 이 우리 장애우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분명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함께 하였음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삼성복지재단이 이 책자가 나오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에 감사하는 바이며, 정책협의회에 참석하셔서 고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지체·시각·청각·정신지체장애우단체 및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본 설문에 참여하여 준 실업장애우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책의 출간에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하신 분들이며 그분들의 솔직한 설문지 작성이 없었다면 이 책이 세상에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것입니다. 부디 이 책자가 그분들의 생각과 심정을 만에 하나라도 왜곡하지 않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문을 대신합니다.

1999. 1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김활용

차례

제 1 부. 실업장애우와 고용

1장. 실업장애우와 고용	9
---------------	---

제 2 부. 실업장애우의 실태조사 결과

2장. 조사목적 및 방법	29
3장. 실업유형별 실태조사 결과	33
4장. 장애유형별 실태조사 결과	87
5장. 성별 실태조사 결과	141

제 3 부. 장애영역별 실업대책

6장. 실업지체장애우의 실태와 대책	207
7장. 실업시각장애우의 실태와 대책	249
8장. 실업청각·언어장애우의 실태와 대책	261
9장. 실업정신지체장애우의 실태와 대책	273

제 4 부. 실업장애우에 대한 정책 제언

10장. 장애우 실업대책의 기본 방향	305
11장. 장애우 실업대책의 구체방안	311

부록.	317
-----	-----

제 1 부 실업장애우와 고용

“장애우직업정책은 사회통합의 원칙, 장애우중심주의의 원칙, 사회연대책임의 원칙, 그리고 차별금지 원칙 등의 기본원칙 하에서 세워져야 한다.

이는 장애우를 단순한 시혜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정하는 것이며, 직업생활을 통해 존엄성을 가지는 존재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함을 전제하는 것이다 ”

- 본문 중에서

제 1 장 실업장애우와 고용

1. 실업장애우의 직업정책 원칙

1) 서언

우리는 무엇인가에 이름을 정해서 규정짓기를 좋아한다. 이것은 나무다. 이것은 코끼리다. 이것은 공기다. 이것은 물 컵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 그런가 보다, 그래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이름을 정한다는 것은 이름을 정한 개념을 포함한다는 것이고, 개념이 세워지면 다른 무엇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게 되고, 결국 다른 무엇에 대한 신비감을 없애고, 상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다준다.

우리 나라는 몸이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과 다를 때 '장애우' 라는 이름으로 규정한다.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는 '장애우' 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부정적인 편견으로 인해 '장애우' 하면 나쁜 이미지를 떠올린다. 이러한 나쁜 편견은 장애우를 무능력하고, 무례하고, 무가치한 사람으로 규정짓는다. 이렇게 규정된 상자는 판도라가 되어 모든 사람에게 잘못된 편견을 심어주게 된다. 그래서 장애를 입는 순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특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다만 기존의 판도라 상자를 통해 새로운 개념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우를 차별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 직업생활에 있어서, 혼사에 있어서, 문화생활에 있어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은 것은 물론 심지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에 접근조차 할 수 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구조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평등한 구조임을 나타내고 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와 평등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데 대해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사회 현실은 가진자의 입장에서, 힘있는 남성 위주로 그리고 사회적 강자의 입장에서의 자유이고 평등이다.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우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같은 공간에 있기를 거부하고 있다. 단적으로 말할 때 장애우를 격리 수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우생학적 법칙이 사람사는 사회에서도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1980년 유엔(UN)은 장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전참여와 평등' 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래서 「세계장애인의 해 십년」을 정하고 전지구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결의하였던 것이다. 이는 장애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사회 통합이 진정 이루어져야 하고 사실상의 통합이 가능하려면 복지서비스의 확대보다는 인권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함께 살아가는 통합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장애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차별적 요인들을 제거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경찰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전환하면서 국가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소외계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애우 차별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요구되어 진다. 국가권력은 장애우가 인간존엄의 주체로서의, 평등한 존재로서의, 인권의 주체로서의 지위가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통해서 보장 의무에는 장애우의 인권도 존중해야 하고 나아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엄숙한 명령이 들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독립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자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동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우가 직업을 가지는 것은 자유의 주체로서 가능하다. 그러나 사실상 장애우가 직업생활이 가능하려면 국가권력의 개입이 요구된다. 직업정책에 있어서의 국가개입은 장애우가 직업을 가지기 위해 진로지도, 해아하고, 직업탐색, 직업평가, 직업훈련, 알선 및 사후지도 등 직업생활이 가능하도록 모든 지원서비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직업에 있어서의 자유가 실제로 가능할 것이고, 장애우의 인간 존엄이 지켜질 것이고, 장애우와 비장애우 사이의 평등이 실현될 가능성을 높여줄 결정적인 수단이 확보될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의무 이행은 법적, 정책적, 제도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2) 우리나라 장애우 직업 정책 형성 과정

우리나라 직업정책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전쟁에서 부상당한 원호대상자를 위한 특별지원책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1961년 제정된 「국가원호대상자고용법」에 의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영기업체 그리고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민간기업체 및 단체는 상시고용인원의 5%를 국가원호장애우로 충원토록 하는 것으로 국가차원의 장애우직업정책이 마련된다. 이어 1963년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이, 그리고 「산재상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산재장애우에게 직업서비스가 실시되었다. 196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일반장애우를 위한 민간단체차원의 직업서비스가 실시된다. 1967년 삼육재활원에서 양재, 편물, 원예 등의 공과에 22명이 직업재활을 받게 되었고, 이듬해에는 명휘원에서 수공예, 의류, 조화, 그림 등의 직업보도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서서도 국가차원의 직업정책은 명확히 세워지지 않았고, 다만 79년 삼육재활원에서 중증장애우를 위한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 일반장애우를 위해 국가차원의 직업정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최초의 법은 1981년에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이다. 「심신장애자복지법」 제11조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국가가 장애우복지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제정되었다기보다는, 당시 신군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정권의 정당성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장애우의 복지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유엔의 권고를 거부할 수 없는

정치적인 배경이 있어 제정되었기에 애초 이 법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한 직업정책이 실제로 만들어지지 않았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장애우고용과 관련하여 「심신장애자복지법」외에 1982년 정부는 「직업안정법」을 개정하여 장애우의 고용촉진과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적성직종 52개를 법정화 하였으며, 1986년에는 「직업훈련법」이 개정되어 일반인을 위한 직업훈련시설에서 장애우를 직업훈련대상자로 확대하였다. 같은 해 정부는 중증장애우를 위한 보호작업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2개 자립작업장을 시범 운영했다. 그리고 1989년 12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우리 나라에서는 의무고용제를 중심으로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

3) 장애우 직업정책의 기본원칙

장애우직업정책은 사회통합의 원칙, 장애우중심주의의 원칙, 사회연대책임의 원칙, 그리고 차별금지의 원칙 등의 기본원칙 하에서 세워져야 한다. 이는 장애우를 단순한 시혜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정하는 것이며, 직업생활을 통해 존엄성을 가지는 존재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함을 전제하는 것이다.

기존의 장애우 직업정책은 고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이제는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또한 정신지체, 자폐증, 뇌성마비, 간질, 신경정신적장애, 맹인, 중증·중복지체장애우 등 직업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중증장애우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직업지원서비스의 개념도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지도 등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자영업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책, 금융지원, 세계상의 지원, 경영상의 지원 등을 담아야 하고, 일반기업체의 취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지원고용, 지정고용, 창업지원, 발주지정제도, 보호고용 등 다양한 지원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직업재활 사업주체의 다양화, 전문화,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에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만이 장애우직업서비스에 있어서 공식적인 기관이었으나 이제는 모든 장애우단체는 물론, 장애우복지관, 장애우직업재활시설, 특수교육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 위치한 관련 기관을 활용하여 지역내에 거주하는 장애우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고용정보 및 직업재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 지도록 해야 한다.

한편 무엇보다도 장애우 중심의 직업정책이어야 한다. 기존 법에서는 사업주 중심의 고용정책에 치중한 나머지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내용이 부재하였다. 그러나 장애우중심의 직업정책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차별금지, 사회통합, 장애인중심의 서비스, 직업적 중증장애인에 대한 우선 지원, 사회적 책임성을 분명히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인 장애우가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 서비스 주체로서 직업재활과정을 신청하고 요청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우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여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장애우 고용정책이 원활하게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직업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치로

서비스의 전문화가 있을 때라야 가능하다. 기존 법에는 직업생활상담원에 대한 규정만 있고, 이들의 배치와 다양한 전문인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장애인직업재활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직업능력평가, 직업재활상담, 직업훈련, 직무지도 등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 배치할 때라야 직업재활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가능하다.

이러한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통한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가 중요하다. 장애인의 경우 경쟁 고용 형태로만 고용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원고용, 지정고용, 보호고용 등의 다양한 형태의 고용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국가책임주의 원칙이 명시적이어야 한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도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특정한 직종의 일정비율만큼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도록 해야 하고, 강제 의무 이행수단이 확보되어야 한다.

행정전달체계의 효율성과 연계성 강화도 절실하다. 장애인은 전생애적으로 그리고 생활 모든 영역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직업에 있어서도 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정보통신부 등 여러 창구의 협조체계 및 연계성이 있어야 사회통합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이 전제가 되면, 중증장애인의 발굴과 상담, 직업훈련, 직종개발, 직업평가 그리고 직업알선 등 종합적인 직업재활과 고용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번번히 발생하는 차질과 부작용을 막고, 지역사회, 특수학교, 기업체간의 연결을 보다 공고히 하며, 모든 훈련프로그램이 복지부와 고용촉진공단과의 긴밀한 협조와 전문적 지원하에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중복이나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소비자인 장애인의 정책접근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장애인 직업정책 현황

1)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실태¹⁾

이 부분은 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95년 전국 39,078가구의 130,5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와 그 조사에서 확인된 재가 장애인 3,355명 중 15세 이상인 3,238명을 대상으로 추가로 실시된 「재가 장애인 취업실태조사」 결과,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1998년 장애인고용현황으로 제시한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① 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와 실업 실태

1995년 장애인 실태조사결과,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세 이상의 재가 장애인은 992,500명으로 추정되며 그 중 경제활동인구는 435,500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43.9%이다. 이는 1994년도 국민전체의 경제활동참가율 61.7%에 비하여 17.8%가 낮은 수준인 반면, 장애인 실업률은 27.4%로 비장애인의 실업률 2.4%에 비해 11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1) 오길승, 「실업장애인정책과제를 위한 정책협의회 발표문」 1999. 11. 에서 재인용한 것임.

<표1-1> 재가 장애인의 경제활동 실태

(단위: 명, %)

재가 장애인 총인구	15세 이상(생산가능연령)재가 장애인 인구				
	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소계	취업자	실업자	
1,028,800	992,500 (100.0)	435,500 (43.9)	316,100 (31.9)	119,400 (12.0)	557,000 (56.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1995.

경제활동상태를 연령별로 보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연령계층인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대 후반에 있어서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6.0%나 되어 거의 3명 중 1명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지만, 동연령에 있어서 비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2.9%에 불과하다. 비장애인의 경우 이 연령층은 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는 시기여서 노동시장에의 진입이 늦은 반면, 장애인은 취학률이나 진학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관계로 일찍부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1-2>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단위: %)

구분	계		남자		여자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계	43.9	61.7	57.7	76.4	27.7	47.9
15-19세	36.0	12.9	33.3	10.4	45.8	15.6
20-24세	71.8	62.1	77.5	58.3	65.2	64.7
25-29세	72.5	68.5	83.3	90.2	57.4	45.6
30-34세	74.1	73.5	82.5	97.2	50.0	48.6
35-39세	80.3	78.7	92.7	96.5	59.0	59.6
40-44세	76.8	80.7	81.2	96.5	67.6	64.2
45-49세	72.3	78.6	79.9	95.1	57.5	61.1
50-54세	60.6	75.0	76.4	91.5	38.8	58.7
55-59세	45.5	68.9	54.2	84.4	31.7	53.9
60세 이상	17.4	38.2	26.1	53.8	11.0	27.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장애인 취업실태조사」, 199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4.

반면, 생애주기에 있어서 가장 왕성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계층인 40대부터는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비장애인 보다 낮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경제활동 참여율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장애인의 경우 질병이나 각종 사고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비장애인에 비하여 일찍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것

을 시사한다. 결국 전체적으로 볼 때, 장애우는 비장애우에 비하여 일찍부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반면, 노동시장에서의 퇴장 역시 빠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우 실업률은 27.4%로 비장애우의 실업률 2.4%에 비해 11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것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우 중 거의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1-3>을 통해 보면 특히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연령계층인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실업률은 장애우의 경우, 각각 85.2%와 47.6%나 되어 비장애우의 9.4%와 6.8%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러한 연령층에 있어서 장애우들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이 취업하지 못하고 실업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며 결국 장애우에 대한 취업기회가 비장애우에 비해 매우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비장애우에게 있어서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연령계층인 20대 후반부터는 실업률이 급격히 떨어져 완전고용상태에 있는 반면, 장애우의 경우 20대 후반에도 계속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어, 결국 장애우에 대한 취업기회가 비장애우에 비해 매우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표1-3> 장애우와 비장애우의 실업률 비교

(단위: %)

구분	계		남자		여자	
	장애우	비장애우	장애우	비장애우	장애우	비장애우
계	27.4	2.4	24.7	2.7	34.1	1.9
15-19세	85.2	9.4	82.4	10.2	90.9	8.9
20-24세	47.6	6.8	40.0	9.0	60.0	5.4
25-29세	34.0	4.2	27.1	5.2	48.4	2.0
30-34세	23.8	1.7	21.2	2.0	36.4	1.0
35-39세	24.1	1.5	19.4	1.9	38.8	0.7
40-44세	24.6	1.4	20.8	1.6	34.0	0.9
45-49세	19.8	1.1	15.7	1.5	30.4	0.6
50-54세	31.6	0.9	31.0	1.1	32.5	0.5
55-59세	28.9	0.7	30.1	1.0	25.6	0.4
60세 이상	20.0	0.3	20.5	0.4	19.1	0.1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장애인 취업실태조사」, 1995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4.

장애우의 경제활동상태를 장애유형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표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활동 참여율은 언어장애우가 53.1%로 가장 높고, 다음이 정신지체인인 46.8%, 지체장애우 44.0%의 순이며, 시각장애우가 36.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업률은 정신지체인의 경우 45.7%로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정신지체인 2명 중 1명이 실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다음이 언어장애우로 이들의 실업률은 38.5%, 지체장애우는 28.5%, 시각장애우 23.5%가 실업상태에 있으며, 청각장애우의 실업률이 14.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4> 장애유형별 실업실태

(단위: 명, %)

구분	계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계	3,218	1,412	1,025	387	1,806	43.9	27.4
지체장애	2,224	979	700	279	1,245	44.0	28.5
시각장애	236	86	65	20	150	36.3	23.5
청각장애	487	214	184	30	273	43.9	14.0
언어장애	98	52	32	20	46	53.1	38.5
정신지체	173	81	44	37	92	46.8	45.7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장애인 취업실태조사」, 1995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4.

② 장애우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

장애우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장애우의 31.4%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가장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다음이 단순노무직으로 23.0%, 기계·장치 조작 등의 일을 수행하는 기능직이 18.2%, 서비스직이 17.9%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비장애우의 경우 전문·사무직 종사자가 전체의 27.8%를 차지하여 다수를 점하고 있고 다음이 기능직으로 26.6%, 서비스직 21.6% 등의 순이며, 장애우 취업자의 다수를 점하는 농업직에는 12.8%만이, 단순노무직에는 11.2%만이 종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장애우 취업자가 종사하고 있는 일의 종류가 주로 농업, 단순노무직 등 사회적 지위가 낮은 업종인 반면, 비장애우의 경우에는 전문·사무직 등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1-5> 장애우와 비장애우의 직업분포 비교

(단위: %)

구분	계	전문직 및 사무직	서비스직	농업	기능직	단순노무직
장애우	100.0	9.4	17.9	31.4	18.2	23.0
비장애우	100.0	27.8	21.6	12.8	26.6	11.2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장애인 취업실태조사」, 1995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4.

또한, 취업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표1-6>과 같이 지체장애우의 경우 그들의 약 사분의 일인 24.9%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서비스직에는 21.9%, 단순노무직에는 21.8%, 기능직에는 19.9%가 취업하고 있어서 지체장애우가 종사하고 있는 직종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청각장애우의 경우 과반수인 51.3%가 농업에, 언어장애우의 45.1%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정신지체우의 경우 46.3%가 농업에, 그리고 41.3%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어서 청각, 언어, 정신지체우의 경우 한 두개의 직업에 집중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지체장애우와 시각장애우 중에서 전문·사무직의 비율이 각각 11.5%, 12.8%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서 많이 그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6〉 장애유형별 직업분포

(단위: 명, %)

구분	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응답자수	1,025	700	65	184	32	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문·사무직	9.4	11.5	12.8	3.8	2.4	0.0
서비스직	17.9	21.9	11.2	10.0	13.7	0.0
농업	31.4	24.9	38.1	51.3	26.6	46.3
기능직	18.2	19.9	14.6	15.6	12.2	12.4
단순노무직	23.0	21.8	23.4	19.3	45.1	41.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장애인 취업실태조사, 1995.

③ 장애인 취업자의 고용형태별 분포

취업자들의 고용형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 취업자의 경우 과반수 이상인 54.3%가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 근로자인 반면 비장애인 취업자의 경우 62.0%가 상용 및 임시 취업자와 일용직 취업자 등 임금 근로자로 나타나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다른 사람에 의해 고용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애인 취업자는 비임금 근로자 중에서도 피고용인 없이 자기 혼자 기업이나 농장, 상점 등을 경영하는 자영업자가 39.6%를 차지하고 있어서 비장애인 자영업자 비율인 20.5%에 비해 거의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사람 이상 피고용인을 두고 기업이나 농장, 상점 등을 경영하는 고용주의 비율은 장애인 취업자 중에서는 3.1%에 불과한 반면 비장애인 취업자의 경우 7.3%로 나타나 장애인 고용주의 비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근로자 중 상용 및 임시 근로자의 비율은 장애인 취업자의 경우 31.3%, 비장애인의 경우 53.1%로 나타나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비하여 21.8%나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취업상태가 불안정한 일용직에는 장애인 취업자의 14.4%가 종사하고 있어서 비장애인 취업자의 8.9%에 비해 5.5%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노동시장에 있어서 특히 장애인에게 제한적인 취업기회의 영향으로 인하여 장애인은 주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많으면서도 다른 피고용인을 둘 수 없는 영세한 수준인 경우가 많고, 임금 근로자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하여 상용 및 임시 근로자의 취업형태는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비교적 불안정한 취업형태인 일용직에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보여 장애인의 취업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잘 시사하고 있다.

〈표1-7〉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형태분포 비교

(단위: %)

구분	비 임금 근로자				임금 근로자		
	계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계	상용·임시	일용직
장애인	54.3	3.1	39.6	11.6	45.7	31.3	14.4
비장애인	38.0	7.3	20.5	10.2	62.0	53.1	8.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장애인 취업실태조사, 199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4.

장애유형별 취업자들의 고용형태를 분석해 보면, 먼저 지체장애인의 경우 자영업자가 41.6%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상용 및 임시근로자의 비율도 34.1%로 높게 나타났다. 시각장애 역시 자영업자의 비율이 46.9%로 높게 나타났으며 임금근로자 중 일용직의 비율이 19.8%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장애인의 경우 상용 및 임시근로자의 비율이 45.7%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자기에게 직접적인 수입은 오지 않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사업체에 도움을 주고 있는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34.9%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8〉 장애유형별 고용형태분포 구성비

(단위: %)

구분	비 임금 근로자				임금 근로자		
	계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계	상용·임시	일용직
지체장애	52.9	3.4	41.6	7.9	47.1	34.1	13.0
시각장애	62.7	1.9	46.9	13.9	37.3	17.5	19.8
청각장애	60.3	3.4	37.9	19.0	39.7	21.8	17.9
언어장애	37.8	0.0	25.9	11.9	62.2	45.7	16.5
정신지체	48.1	0.0	13.2	34.9	51.9	38.0	13.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장애인 취업실태조사, 1995.

④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실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 35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와 동법 시행령 제 33조에 의하면 3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는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사업체가 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시행 첫해인 1991년에는 1.0%, 1992년에는 1.6%이었으며, 1993년부터는 2.0%로 상향조정되었다. 1997년 12월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대상사업체는 2,184개로서 고용의무인원은 43,411명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로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수는 10,331명으로 고용율은 0.46%이고 고용의무인원의 23.7%에 불과하다. 이는 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1990년 말에 의무고용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의 수가 7,758명인 것에 비하면 그 동안 증가된 고용 장애인의 수는 2,573명으로 연평균 367명의 고용증가에 불과한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30대 재벌기업 338개 업체의 평균고용률은 0.25%에 불과해 더욱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은 〈표1-9〉에 잘 정리되어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 34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8년 6월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해야 할 장애인의 수는 6,186명이지만 장애인 공무원의 수는 3,570명으로 의무고용률 2%에는 크게 못 미치는 1.15%로서 의무고용 이행률은 57.7%에 머물고 있다. 또한 정부 출연 및 투자기관의 장애인 실고용률도 각각 1.27%, 0.79%로서 민간기업의 실고용률 0.46%에 비해 조금 나은 편이지만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기관들조차 제대로 의무고용을 이행하

지 않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들 정부기관들은 민간기업들과는 달리 장애우 의무고용 미달인원에 대한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장애우 고용부담을 민간기업에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표1-9〉 장애우 의무고용 이행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 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투자기관		일반사업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타현법기관	소 계	정부출연기관	정부투자기관	고용의무사업체	30대제별
대상사업주 수	44	16	16	4	70	26	18	2,184	338
상시근로자 수	-	-	-	-	-	28,605	144,391	2,907,897	1,137,733
적용대상근로자 수	82,512	166,303	49,867	12,706	311,338	25,252	112,716	2,240,868	891,433
고용의무인원	1,625	3,320	989	252	6,186	494	2,246	43,411	17,682
장애인가로자수	789	2,176	552	53	3,570	321	869	10,331	2,207
실고용률	0.96	1.31	1.11	0.42	1.15	1.27	0.79	0.46	0.25
비 고	'98. 6. 30					'98. 6. 30	'98. 6. 30	'97. 12. 31	'97. 6. 30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고용현황』, 1998.

하지만 일반 고용의무사업체의 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 첫해의 0.37%에 비해 1997년 12월 3일 현재 0.46%로서 약 0.09%포인트 밖에 증가하지 못한데 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 첫해의 0.52%에 비해 1998년 6월 30일 현재 1.15%로서 약 0.63%, 즉 2배 이상 증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장애우고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10〉 연도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고용현황

(단위 : 개소, 명, %)

연 도	적용대상근로자수	의무고용인원수	장애인가로자수	고 용 률
1990. 12. 31	-	21,000	7,758	0.37
1991. 12. 31	2,170,898	33,692	8,764	0.40
1992. 12. 31	2,152,751	33,411	8,748	0.41
1993. 12. 31	2,013,363	39,059	8,843	0.44
1994. 12. 31	2,092,005	40,585	9,097	0.43
1995. 12. 31	2,238,490	43,505	9,582	0.43
1996. 12. 31	2,279,116	44,455	10,185	0.45
1997. 12. 31	2,240,868	43,411	10,331	0.46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고용현황』, 1998.

⑤ 취업장애우 월평균 근로소득

취업장애우가 일해서 버는 월평균 근로소득(자영업자의 경우 순소득)은 전체 평균 77만9천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107만4천원(1995년 2/4분기, 노동부, 1995)의 73% 수준으로 비장애우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장애종류별 평균소득을 알아보면, 〈표1-11〉에서와 같이 지체장애가 82만7천원으로 가장 많고, 시각장애 64만5천원, 청각·언어장애 73만3천원, 정신지체 35만원으로 정신지체가 가장 낮다. 성별 근로소득은 남자가 86만1천원으로, 여자의 47만3천원보다 평균 38만8천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80만8천원인 반면, 농촌지역은 67만5천원으로 지역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애우의 연령별 근로소득에 있어서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30대에 평균적으로 가장 높다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우의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자영업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1인당 86만6천원으로 가장 많고, 상용근로자는 81만3천원, 일용직은 54만6천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11〉 취업장애우의 1인당 월평균 근로소득 분포 구성비

(단위 : %)

월평균소득	전 체	지 체 장애	시 각 장애	청각·언어	정 신 지 체
25만원 이하	14.1	12.4	26.2	11.9	33.0
26-50만원	26.7	24.7	20.5	32.0	51.4
51-100만원	42.0	43.4	40.8	42.8	15.5
101만원 이상	17.2	19.5	12.6	13.4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수	716	518	48	121	29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장애인 취업실태조사』, 1995.

주 : 무응답 105명 제외.

⑥ 기타사항

15-59세의 재가 장애우를 대상으로 장애우 의무고용제도 및 직업상담, 직업평가, 취업알선, 사후지도의 고용관련 서비스 등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우 고용촉진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20%수준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해서는, 그것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장애우들이 조사대상 중에 75.1%를 차지하였으며, 알고도 이용한 적이 없는 장애우가 23.5%이었고, 공단을 이용한 적이 있는 장애우는 1.4%에 불과하여 우리나라 장애인고용 촉진업무의 주요 창구인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인지도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우의 취업경로를 살펴 볼 때, 조사대상 장애인의 62.9%가 '스스로'에 응답해 혼자 힘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가족, 친지, 이웃 등의 소개'에 의해서가 33.1%, 장애인관련기관이나 단체, 행정기관 등 행정적인 기관을 통하는 경우는 2.1%에 불과해, 장

애우들은 취업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경우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 취업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고용정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장애인들이 취업의 측면에서 도움을 받고자 믿고 찾을 수 있는 업무의 체계화와 전문화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2) 장애인 직업정책 관련법 실태

①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입법 배경

장애우에 대한 고용기회보장을 위한 국가적인 시책은 주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다수의 전쟁부상자들을 대상으로 전개되어 일반 장애우들에게로 확대되어 온 것이 일반적 경향이라고 본다. 우리 나라에 도입되는 일반적인 장애인고용 의무제도는 근본적으로 노동능력이 있는 경제활동 장애우에 대하여 직업생활 참여기회를 널리 확대하고, 노동시장에서 유희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을 꾀함으로써 종전의 임시 방편적, 시혜적 장애우복지 시책에서 탈피하여 이제부터는 근원적인 차원에서 장애우의 자립생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점에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러한 제도의 실시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보다도 장애우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범국민적인 분위기조성과 사업주로 하여금 장애우가 아닌 사람 못지 않게 우수한 노동능력을 갖고 있는 장애우에 대하여는 직업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계기가 되고, 투철한 직업관을 확립하여 충실한 직업생활을 하기 위한 자각과 능력개발을 부지런히 하도록 유도하게 된다는 점이다.

장애우라 함은 입장이나 시각에 따라 서로 달리 정의된다. 이 법에서는 장애우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장애우 인원은 대략적으로 400만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장애우 출현률은 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27%,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3.38%, 갤럽조사연구소 2.7%, 세계보건기구 10%)에 따라 달리 주장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우의 발생원인에 있어서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경우는 3%정도에 그치고 97% 이상이 후천적 요인에 의하여 장애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다수 장애의 원인이 이른바 유전이나 개인적 탓이 아니라 교통사고, 산업재해, 전쟁, 전염병 등 질병,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야기되므로 장애우의 고용문제는 장애우 자신의 책임으로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장애우가 아닌 사람 모두를 포함한 사회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결국 아무도 장애우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으며 따라서 장애우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경제사회활동에 참가하여 거기에서 보람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복지수준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특히 산업사회에서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장애우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고용기회의 확보는 대단히 중

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고법)의 이념적 배경은 사회연대 책임이다. 장애발생은 개인 탓이라기 보다는 사회구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재해, 교통사고, 공해문제 등은 결과적으로 개인에게 있어서는 장애를 안겨주기 때문에 우리사회 모두의 책임이다. 특히 산업화과정에 장애발생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책임은 그만큼 더욱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장애우를 기업이 의무고용 한다는 사실은 당연히 치뤄야 할 의무다.

② 장고법 주요 내용과 한계

장고법 제정 논의의 주요 의제는 대략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고용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이 법의 주요대상은 어떤 장애우인가, 셋째, 장고법 소관 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가 등이다. 이중 의무고용형태로 가지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 조율이 어렵지 않았으나, 시각·뇌성마비·정신지체우 등 직업을 갖는데 있어서의 중증장애우 중심의 법체제로 가지는 안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었다.

당시 상황을 되짚어 보면, 대학을 졸업하고, 경증인 지체장애우 조차 취업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경증장애우 고용 문제가 해결된다면 국가는 당연히 중증장애우고용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믿었다. 그래서 장고법은 노동부가 관장하게 되었고, 일반고용을 원칙으로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시행된 장고법은 지난 8년 동안 기대한 것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장고법 개정논의가 있어왔다. 장고법은 고용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전반적인 장애우의 직업정책을 다루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고, 중증장애우직업정책을 위한 지원책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애우 직업정책을 세움에 있어 장고법을 대신할 새로운 법체정이 절실하게 대두되어 왔다.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앞서 지적한 장고법이 가지고 있는 장애우직업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안으로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이하 장재법)은 1999년 정기국회를 통과해 2000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 나라에서 장애우 직업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 라고 볼 수 있다. 당시 대학을 졸업하고 장애정도가 비교적 미미한 장애인조차도 일반 직장에 취직해서 일할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어려운 때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고법 제정은 많은 장애우들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런데 장고법은 자격을 갖춘 경증장애우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러 형태의 직업생활 중에 한 부분인 고용에 초점이 맞춰진 한계를 가지고 만들어진 법이어서 몇 년 전부터 정체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특히 시각장애우, 정신지체장애우 그리고 뇌성마비장애우 등 직업에 있어서 중증인 사람들과는 관계 없는 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장고법 제정당시만 해도 우리 나라 산업구조는 제조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

만, 이제는 지식·정보산업 등의 새로운 산업구조로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달라진 산업 환경은 장애인직업정책에 있어서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장고법이 고용이 중심이 되어 제정되었다면 이제는 3차산업, 자영업, 일인기업, 공동사업장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직업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질병에 의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비교적 젊고, 직업에 있어서 장애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가 많았다(장고법 논의 당시에는 소아마비로 인해서 장애를 입거나, 산업재해 장애인 중에도 젊은 사람들이 다수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릴 때부터 장애를 입는 경우 장애정도가 심하다(정신지체, 시각, 뇌성마비 등). 그리고 중도에 장애를 입는 경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는 3-40대이다(교통사고, 산업재해, 성인질병 등). 그래서 지금은 장애추세는 적어도 직업에 있어서는 중중이면서, 고령·중복 장애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결국 장애우의 직업정책은 고용중심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게 된 장애우들이 장애 정도에 따른 직업정책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는 18개 전국단위의 장애우단체장들이 연명해서 장애우직능대표인 이성재의원을 통해 정부 여당에 강력한 의사를 전달을 하면서 본격적인 장애인직업재활법(안)(이하 직재법)이 논의되었다.

최종적으로 통과된 장재법 주요내용을 보면, 개정전 법인 장고법은 6장 65조로 구성되었으나 개정법은 6장 75조로 양적으로는 10개 조항이 늘어났다. 그리고 법 시행상에 있어 직업재활과정상 논리적인 장, 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2조(정의)에 2호 중증장애우, 3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6호 직업능력개발훈련, 7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제8조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추가로 정의되어 있어 중증장애우 직업재활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있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중증장애우 및 여성장애우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제5조(장애인의 자립노력 등)에 보호하고 있는 자에 대한 책임을 추가했고,

제6조(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 등)에 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7조(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를 새로 신설함으로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제8조(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에 특수교육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 새로 추가 됐고,

제9조(직업지도)가 상당히 수정됐다. 예를 들어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적합직종 개발, 비용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직업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제10조(직업적응훈련)를 통해 직업적응훈련을 받는 장애우에 대해 훈련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직업적응훈련시설에 대해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특히 정신지체 장애우의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된 셈이다.

제11조(직업능력개발훈련)는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이 마련됨으로서 중증장애우에게 직업능력 개발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새로 추가).

제12조(지원고용)는 중증장애우를 위해 새로 추가되었고,

제13조(보호고용)의 경우 일반적인 작업환경 하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우를 위한 일자리 마련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다(새로 추가).

제14조(취업알선 등), 제15조(취업알선기관간 연계 등)은 취업알선 사업을 장애인복지관련 기관에서 할 수 있고, 필요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 창구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들 기관간에 구인·구직정보 교류, 장애인근로자 관리 등의 효율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마련된 셈이다.

제16조(자영업장애인 지원)는 실제로 장애우 중에 60% 가까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항으로 특히 3-40대에 장애를 입는 중증장애우의 경우에 있어서는 매우 의미 있고 필요한 조항으로 보여진다.

제22조(장애인실태조사 등)를 통해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의 근거를 가지고 수립된 장애인직업정책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정책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3장(장애인고용의 및 부담금) 제2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에서는 그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의무고용에서 임의 사항이었으나 이번 법에서는 강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신규채용시는 2/100에서 5/100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민간기업과 같은 제재조치를 명시해 놓고 있지 않아 앞으로 많은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외직종에 대한 조항이 계속 남아 있어 실질적인 고용증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26조(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에 중증장애우와 여성장애우에 대해서는 2배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직업기회가 적은 장애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4장(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경우 제36조(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설립)에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후 적응지도등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업무의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타 장애인복지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리고,

제41조(임원의 임면)에 비상근이사의 2분의 1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게 되어 있어 복지부와 상호협력을 필요로 하게 되어 있다.

제52조(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있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53조(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의 특례)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우의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단에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필요경비는 2항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61조(기금의 용도)에 이를 잘 반영하고 있는데,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또는 장애인고용을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용자·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각종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영업장애우의 경우 창업자금 용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직업정책의 틀을 마련하지는 「장애인직업재활법」운동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면 보다 많은 장애우들이 직업생활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직업생활을 통해 모든 장애우는 당연한 국가구성원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를 하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또한 현실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납세의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추상적인 자유와 의무에서 현실적인 자유와 의무가 가능함으로써 사회 일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을 것이다.

1999년 정기국회에서 제정된 장애인직업관련법 협의안은 앞서 지적한 기본원칙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나 장애인직업정책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기존의 장고법이 사업주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새로 제정된 법은 장애우를 지원하는 법조항이 상당한 비중으로 반영되었다. 그리고 고용지원 제도가 여러 형태로 지원되는 등 직업정책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직업정책 실시 기관의 다양한 참여구조가 마련됨으로써 장애인직업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은 복지부와 노동부간의 어정쩡한 합의 구조로 되어 있어 법시행에 책임성이 결여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의무에 따른 제재조항이 없거나, 새로 도입된 제도 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조항은 대체로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집중성 보다는 오히려 역할만 늘어나 전문성을 더 떨어뜨릴 것으로 보이는 등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제 2 부 실업장애우의 실태조사 결과

“저는 세대주 32년생 〇〇〇입니다. 62년생 〇〇〇, 63년생 〇〇〇, 두 남매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자식 〇〇는 운전을 할 수 있고 라보 고물차도 갖고 있습니다. 몇 년전 자식과 같이 자영업이라도 해보려고 동사무소에 용자도 신청해보았지만 국민은행에서 보증인 불충분으로 탈락했습니다. 이상태에서 그나마 소액을 갖고 노점장사도 이것저것 해 보았지만 구에서 노상인 막지요, 단지내에서도 장사를 못하게 하죠. 정말 지쳐서 빚만 졌습니다. 가족이 모두 무기력하다고나 할까요? 특별로 우리같은 장애인 가족들에게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골목시장이라도 제공해 줬으면 좋으련만 무료주차장은 여러군데 설치해놓고 장애인들의 생업터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조건 노상인을 막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버스표 파는 박스도 위에서 간부들이 차지하고 있고 저희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사용하지 않은채 권리금만 챙기고 우리같은 장애가족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어느 실업장애우의 편지중에서 -

제 2 장 조사목적 및 방법

1. 실태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 IMF 외환위기를 맞아 우리나라의 장애우의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상황인식 하에서 출발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IMF 구제금융하에 놓인후 1~2년이 흐르는 기간동안 실제 국민의 생활상의 변화가 어떠한 지에 대한 정확한 접근이 빈약한 상태로나마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위기상황 하에서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기 마련인 사회적 약자 및 신체적 약자들, 그중 특히 직장이 없는 장애우들의 실생활조건에 대한 성의있는 실태조사는 거의 전무한 상태였으므로 이에 실업장애우에 대한 실태파악을 조사의 일차적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실업장애우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책이 활성화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실업대책에 대한 실업장애우들의 반응과 실제적인 보호효과를 조사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검토한 후 실업장애우들에게 걸맞는 적절한 실업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기초조사의 성격을 조사의 이차적 목적으로 하였다.

2. 조사대상

실업장애우들에 대한 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소재파악이나 접근에 있어서의 제약으로 인하여 용이하지 않으나, 본 조사에서는 실업극복국민운동본가 지원하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장애우 겨울나기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

즉, 본 겨울나기 프로그램의 수혜대상자 1660명에게 설문지를 발송한 결과 총 700매가 응답수 거되었으며 이중 응답의 일관성을 상실한 것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674매를 선정하여 조사에 이용하였다.

1) 이 시기 우리나라 일반실직자에 대한 실상을 정확히 알기 위하여 행해진 가장 대대적인 실태조사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행한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보고서(1999)』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실업 장애우에 대한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 장애우 겨울나기 프로그램이란?

▷ 프로그램의 성격 :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가 주관하는 겨울나기 프로그램 가운데 본 연구소에서는 장애우를 사업대상으로 하며 1999. 1. - 3. 개월동안 매달 10만원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조건 : 구직등록을 마친 자로서,

- 의료보험료 청구금액이 19,800원 이하

- 자신의 주택일 경우 5,000만원 이하, 전·월세일 경우 서울을 포함한 6대도시는 3,000만원 이하, 지방을 포함한 지역은 2,000만원 이하

- 가구원중 1인 기준 월 소득 366,000원 이하

에 해당하는 자로 함(시설보호자 제외)

※ 단,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단체추천서(전체의 8%)를 작성하여 지원받도록 함.

예를 들어 자기집이 있는데 사는 것이 힘겹다고 판단될 경우 / 아이들이 장애인인데 부모가 일을 가지지 않았을 경우 / 의료보험료를 19,800원 이상 내지만, 힘겹다고 판단될 경우 / 휠체어이용 장애인인데 도우미가 없어 구직등록필증을 끊지 못할 경우

3. 조사방법

본 설문에 대한 응답은 우편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게 하였으나, 시각장애인 등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면담을 통하여 조사자가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기도 하였다.

4. 조사실시 시기

1999년 3월-4월 중

5. 조사의 한계

본 조사는 실업장애우에 대한 독자적인 표본추출을 행한 것이 아니라 겨울나기프로그램의 참여자를 중심으로 설문조사가 행하여졌으므로 표본추출단계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재 실업상태에 처한 장애우에 접근할 수 있는 더 나은 현실적인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 방법이 차선으로서 채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는 응답자가 겨울나기프로그램에 신청, 등록된 자들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첫째, 조사자의 대부분이 겨울나기 프로그램의 신청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저소득에 해당하는 자라는 점.

둘째, 조사방법상 근로능력과 근로의사가 확인되는 지 여부를 정확히 가릴 수 없으므로 본 조사에는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실업자만으로 조사대상을 명확히 제한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셋째,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된 집단이 그만큼 정보의 취득능력이나 활동능력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특성을 지닌 집단만이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점.

넷째, 겨울나기 프로그램에서 지급하는 지원금만큼 현재의 가구소득이나 개인소득이 상향조정된 상태라는 점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응답집단의 특성이 주는 한계점에 유념하면서 본 실태조사의 결과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제 3 장 실업유형별 실태조사 결과

1. 실업장애우의 실업유형별 특성

먼저 본 조사에 응답한 실업장애우는 단일한 집단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유형을 나누어 그 유형별 특성 및 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3가지 유형이란,

- 가) IMF형 실직장애우
: 1998년 1월 이후에 실직한 장애우로서 IMF 관리경제체제에 따른 한국경제의 위기가 시작된 뒤 실직한 장애우
- 나) IMF 이전 실직장애우
: 1997년 또는 그 이전에 실직한 장애우로서 IMF 관리경제체제에 돌입되기 이전에 실직한 장애우
- 다) 만성실업장애우
: 설문 응답상 직업을 가진 적이 없다고 응답한 장애우로서 만성적인 실업상태에 놓인 것으로 추정되는 장애우(단, 이 경우 면밀히 보자면 노동능력과 노동의사 유무에 따라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리하여 접근하여야 하지만 장애우복지의 이념상 노동능력과 노동의사에 대한 통상적인 적용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여기서는 이에 대한 고려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음)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설문응답자를 그에 따라 분류하면 그 분포 및 구성비는 <표3-1>과 같다.

<표 3-1> 유형별 실업장애우의 분포 및 구성

(단위: 명, %)

유 형	빈 도	구 성 비
IMF형 실직자	134	19.9
IMF 이전의 실직자	280	41.5
만성실업자	260	38.6
총계	674	100.0

2. 실업유형별 조사결과

1)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① 성별 분포

조사대상의 연령은 실직남성장애우가 여성장애우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만성실업자의 경우는 여성실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고, 한국노동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실시한 '98년도 실업실태조사와 비교할 때 장애우 실업자에 있어서는 남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3-2〉 성별 분포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98 실업자 조 사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성 별	남	응답	117	225	174	516	-
		%	87.3	80.4	66.9	76.6	67.0
	여	응답	17	55	86	158	-
		%	12.7	19.6	33.1	23.4	33.0
전 체	응답	134	280	260	674	-	
	%	100.0	100.0	100.0	100.0	100.0	

p=.000

주: 여기에 '98실업자조사란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98년 실시한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보고서』의 결과를 말한다. 이하 모든 표 동일.

② 연령 분포

일반실직자 조사에서는 20대와 30대가 주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나지만, 본 조사에서는 저소득실직장애우를 구성하는 연령층은 주로 30,40대가 주류이며 만성실업자인 경우는 50대까지도 다수를 구성하고 있다.

조사자 전체의 평균 연령은 45.6세이며, 각 유형별로 보면

▷ IMF형 실직자 41.6세

▷ IMF 이전 실직자 45.9세

▷ 만성실업자 47.2세

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실직자 조사시의 평균연령은 38.0세였다.

〈표3-3〉 연령 분포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98 실업자 조 사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연 령	10대	응답	1	-	-	1	-
		%	0.8	-	-	0.1	1.9
	20대	응답	14	15	20	49	-
		%	10.8	5.4	7.7	7.3	31.0
	30대	응답	36	65	56	157	-
		%	27.7	23.3	21.5	23.5	23.9
	40대	응답	50	103	75	228	-
		%	38.5	36.9	28.8	34.1	22.0
	50대	응답	26	63	59	148	-
		%	20.0	22.6	22.7	22.1	15.7
	60대 이상	응답	3	33	50	86	-
		%	2.3	11.8	19.2	12.9	5.5
전 체	응답	130	279	260	669	-	
	%	100.0	100.0	100.0	100.0	100.0	

p=.000

③ 학력 분포

〈표3-4〉 학력 분포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98 실업자 조 사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성 별	무 학	응답	10	30	65	105	15.3
		%	7.8	10.8	25.1	15.8	
	초·동졸	응답	28	66	83	177	-
		%	21.7	23.7	32.0	26.6	
	중 졸	응답	38	81	62	181	14.3
		%	29.5	29.1	23.9	27.2	
	고 졸	응답	45	82	37	164	-
		%	34.9	29.5	14.3	24.6	
	전문대 이상	응답	8	19	12	39	-
		%	6.2	6.8	4.6	5.9	
전 체	응답	129	278	259	666	-	
	%	100.0	100.0	100.0	100.0	100.0	

p=.000

조사자의 학력은 특수학교와 일반학교를 구분하지 않았을 때 중졸이 가장 많았으며(27.2%), 이어 초등학교졸, 그리고 고졸의 순이며 무학도 15.8%에 이르렀다. 전문대졸 이상은 5.9%에 해당한다. 이는 일반 실직자 조상에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할 때 저소득실직장애우의 학력 수준이 매우 차이가 있음을 알게 한다.

④ 거주지 분포

〈표3-5〉 거주지 분포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거주지 특 성	대도시	응답	65	144	108	317
		%	48.5	51.8	41.5	47.2
	중소도시	응답	57	89	94	240
		%	42.5	32.0	36.2	35.7
	농·어·산촌	응답	12	45	58	115
		%	9.0	16.2	22.3	17.1
전 체	응답	134	278	260	672	
	%	100.0	100.0	100.0	100.0	

p=.004

조사대상인 실직장애우들은 대부분 대도시에 집중되어있다. 전체의 82.9%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며 특히 최근 실직자인 IMF형 실직자는 91%가 도시지역에 거주한다. 그러나 만성실업자인 경우는 22.3%가 농·어·산촌에 거주한다. 이는 프로그램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접근이 용이한 도시거주자가 주류를 이룬 것도 있지만, 실직장애우는 상대적으로 도시에 집중되어 기거하는 경향을 말한다고 해석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⑤ 장애종류별 분포

〈표 3-6〉 장애종류별 분포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성 별	지 체	응답	96	229	178	503
		%	72.7	81.8	68.5	74.9
	청각·언어	응답	16	12	15	43
		%	12.1	4.3	5.8	6.4
	시 각	응답	14	36	51	101
		%	10.6	12.9	19.6	15.0
	정신지체	응답	6	3	16	25
		%	4.5	1.1	6.2	3.7
전 체	응답	132	280	260	672	
	%	100.0	100.0	100.0	100.0	

p=.000

실직장애우에 있어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장애유형은 물론 지체장애이다. 전체적으로 74.9%를 차지하며 만성실업자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떨어진다. 또한 청각,언어장애는 IMF형 실직자가 12.1%를 차지하여 다른 유형보다 두드러지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특이하다.

⑥ 장애등급별 분포

〈표3-7〉 장애등급별 분포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장 애 등 급	1급	응답	20	93	109	222
		%	15.7	33.6	42.4	33.6
	2급	응답	48	67	57	172
		%	37.8	24.2	22.2	26.0
	3급	응답	25	62	50	137
		%	19.7	22.4	19.5	20.7
	4급	응답	15	39	24	78
		%	11.8	14.1	9.3	11.8
	5급	응답	10	9	14	33
		%	7.9	3.2	5.4	5.0
	6급	응답	9	7	3	19
		%	7.1	2.5	1.2	2.9
전 체	응답	127	277	257	661	
	%	100.0	100.0	100.0	100.0	

p=.004

장애등급별로 보면 응답자가 실직장애우 가운데에서도 저소득계층인 이유로 1,2,3급 장애우가 많다. 전체적으로는 이들 합계가 80.3%를 차지하나 실직기간이 짧을수록 그 비중은 약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비교적 최근 실직된 유형인 IMF형 실직자는 상대적으로 5,6급의 비중이 타 유형에 비하여 많으며 1,2,3급의 비중이 약하다.

⑦ 결혼상태

실직 저소득 장애우의 절반은 기혼이지만 미혼의 비중도 27.9%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조사 대상자가 대부분 30대 이후이고 20대는 7.4%만에 그치는 점을 생각할 때 더욱 미혼 장애우가 많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만성실업자의 경우는 사별한 비중이 의외로 높은 점도 특기할 만하다.

〈표3-8〉 실업장애우의 결혼상태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결 혼 상태	미 혼	응답	41	70	76	187
		%	30.6	25.1	29.5	27.9
	기 혼	응답	71	154	134	359
		%	53.0	55.2	51.9	53.5
	이 혼	응답	10	29	16	55
		%	7.5	10.4	6.2	8.2
	사 별	응답	5	14	28	47
		%	3.7	5.0	10.9	7.0
	별 거	응답	7	12	4	23
		%	5.2	4.3	1.6	3.4
전 체	응답	134	279	258	671	
	%	100.0	100.0	100.0	100.0	

p=.020

⑧ 가구원수 분포

〈표3-9〉 가구원수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98 실업자 조 사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가 구 원 수	1인	응답	9	35	35	79	-
		%	7.1	12.6	13.7	12.0	5.9
	2~3인	응답	59	132	108	299	-
		%	46.5	7.5	42.2	45.2	39.1
	4~6인	응답	54	100	104	258	-
		%	42.5	36.0	40.6	39.0	52.6
7인 이상	응답	5	11	9	25	-	
	%	3.9	4.0	3.5	3.8	2.4	
전 체	응답	127	278	256	661	-	
	%	100.0	100.0	100.0	100.0	100.0	

p=.490

실직장애우가구원 수는 2-3명이 가장 일반적이나 4-6인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다. 평균 가구원수는 3.5명으로서

- ▷ IMF형 실직자 4.0명
- ▷ IMF 이전실직자 3.4명
- ▷ 만성실업자 3.3명

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일반 실업자조사의 3.6명에 비하면 약간 낮은 편이나 IMF형 실직자는 상대적으로 많은 가구원수를 보여주고 있다.

⑨ 가구원 중 장애우 수 분포

〈표3-10〉 가구원중 장애우 수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장애 가족수 (본인 포함)	1인	응답	70	157	138	365
		%	53.4	56.7	54.1	55.1
	2인	응답	45	83	73	201
		%	34.4	30.0	28.6	30.3
	3인	응답	15	33	37	85
		%	11.5	11.9	14.5	12.8
	4인	응답	0	3	7	10
		%	0.0	1.1	2.7	1.5
	5인	응답	1	1	0	2
		%	0.8	0.4	0.0	0.3
전 체	응답	131	277	255	663	
	%	100.0	100.0	100.0	100.0	

p=.364

응답한 장애우가 속한 가구에는 응답장애우 본인 외에도 또 다른 장애우가 있는 경우가 많아 전체의 44.9%가 그에 속한다. 가구내 평균장애우수는 1.6명이 되고 실직가구는 1.6명, 만성실업가구는 1.7명이 된다.

⑩ 가구주 여부

〈표3-11〉 가구주 여부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98 실업자 조 사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전 체	가구주	응답	91	196	161	448	-
		%	67.9	70.8	62.6	67.1	52.0
	가구원	응답	43	81	96	220	-
		%	32.1	2	9,237.4	32.9	48.0
전 체	응답	134	277	257	668	-	
	%	100.0	100.0	100.0	100.0	100.0	

p=.134

응답장애우가 가구주인 경우는 전체의 67.1%가 되고 실직자의 경우 이들이 가구주인 경우가 만성적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우보다 더 높아 심각한 가정 내의 경제적 고통을 야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일반 실업자 조사에서 가구주의 비율이 52%였던 것을 감안할 때 실직장애우는 더 큰 곤경에 있다고 할 수도 있다.

⑪ 주택소유 형태

〈표3-12〉 실직장애우의 주택소유 형태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98 실업자 조 사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주 택 소 유 형태	자 가	응답	21	51	64	136	-
		%	16.0	18.4	24.6	20.4	55.1
	전 세	응답	21	51	36	108	-
		%	16.0	18.4	13.8	16.2	21.3
	월 세	응답	23	48	39	110	19.2
		%	17.6	17.3	15.0	16.5	
	영구임대	응답	46	102	97	245	36.7
		%	35.1	36.8	37.3	36.7	
	기 타	응답	20	25	24	69	-
		%	15.3	9.0	9.2	10.3	4.3
전 체	응답	131	277	260	668	-	
	%	100.0	100.0	100.0	100.0	100.0	

p=.245

주 : 친척집, 무상거주 등에 해당함.

저소득 실직장애우는 일반 실업자보다 주택소유면에서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일반실업자의 경우 55.1%가 자가인 반면 장애우는 20.4%에 그치며 IMF형 실직자의 경우는 16.0%정도에 그치므로 아주 낮은 자가소유비율을 보여준다 하겠다. 반면 장애우는 영구임대주택이 매우 많아 전체 응답자의 36.7%가 이러한 주택에 기거한다.

⑫ 생활보호대상자 유무

〈표3-13〉 생활보호대상자 유무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생활 보호대 상자여부	예	응답	73	161	158	392
		%	54.9	57.7	61.0	58.4
상자여부	아니오	응답	60	118	101	279
		%	45.1	42.3	39.0	1.6
전 체	응답	133	279	259	671	
	%	100.0	100.0	100.0	100.0	

p=.483

조사응답자의 58.4%는 생활보호대상자로 나타난다. IMF형 실직자의 경우도 54.9%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소득수준과 가구형편을 고려할 때 과연 생활보호대상자로서의 책정 유무가 타당한 것인지는 뒷부분에서 검토할 사항이기도 하다.

2) 실직자의 실직전 취직상태

만성실업장애우를 제외한 실직장애우의 실직직전 취업상태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살핀다.

① 실직 기간

〈표 3-14〉 실직장애우의 실직기간

실 직 기 간	유형별	응답 수	%
	6개월미만	34	8.2
6개월-1년미만	54	13.0	
1년-2년미만	112	27.1	
2년-5년미만	87	21.0	
5년-10년미만	67	16.2	
10년이상	60	14.5	
합 계	414	100.0	

실직장애우의 실직기간은 평균 56개월이며 1년-2년미만사이에 27.1%가 몰려있다. 2년-5년미만사이에 37.2%가 해당한다. 그러나 10년 이전에 실직한 후 이후 취업을 하지 못한 장애우도 14.5%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② 실직전 임금근로자 유무

〈표3-15〉 실직전 임금근로자 유무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98 실업자 조 사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실직전 임금근로자 여부	예	응답	102	196	298	-
		%	79.1	70.8	73.4	88.5
아니오	응답	27	81	108	-	
		%	20.9	29.2	26.6	11.5
전 체	응답	129	277	406	-	
	%	100.0	100.0	100.0	100.0	

p=.049

실직 장애우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73.4%에 이른다. IMF 이후의 실직자의 경우는 79.1%에 이르러 대부분이 임금근로자에서 실직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③ 임금근로자 종사형태

〈표3-16〉 임금근로자 종사형태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98 실업자 조 사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임금 근로자 종사 형태	정규직	응답	43	103	146	-
		%	43.0	52.8	49.5	66.8
	임시직	응답	22	36	58	-
		%	22.0	18.5	19.7	12.3
	일용직	응답	35	56	91	-
		%	35.0	28.7	30.8	20.9
전 체	응답	100	195	295	-	
	%	100.0	100.0	100.0	100.0	

p=.279

임금근로자였던 실직장애우 가운데 정규직은 49.5%에 해당하였고 나머지 50.5%는 임시직 또는 일용직으로 일하였다. 이는 일반실업자의 경우 66.8%가 정규직이고 33.2%가 임시·일용직인 것과 비교할 때 장애우의 경우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놓여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④ 비임금근로자의 종사형태

〈표3-17〉 비임금근로자의 종사형태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98 실업자 조 사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비임금 근로자 종사형태	자영업자 /고용주	응답	11	34	45	-
		%	55.0	47.2	48.9	45.2
	무급가족 종사자	응답	3	12	15	-
		%	15.0	16.7	16.3	6.1
	기타	응답	6	26	32	-
		%	30.0	36.1	34.8	48.7
전 체	응답	20	72	92	-	
	%	100.0	100.0	100.0	100.0	

p=.824

비임금근로자였으면서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우는 응답자 가운데 모두 92명인데 대부분이 IMF 이전에 실업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자영업 또는 고용주이었으나 IMF 이후 이들 가운데에서 실업자로 전락한 자가 상대적으로 볼 때 더 많았고 노점 등 기타 역시 많았다. 일반실업자 조사의 결과치와 비교할 때 장애우의 경우는 노점 등 기타의 항목이 비중을 크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⑤ 실직전 직종

〈표3-18〉 실직전 직종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98 실업자 조 사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실직전 직 종	전문가·기술자	응답	15	35	50	21.3
		%	11.4	12.7	12.3	
	관리행정직	응답	3	3	6	-
		%	2.3	1.1	1.5	
	사무직	응답	6	21	27	13.3
		%	4.5	7.6	6.6	
	서비스판매직	응답	17	43	60	-
		%	12.9	15.6	14.7	
	농업·어업	응답	3	15	15	0.5
		%	2.3	5.4	3.7	
	가능직	응답	37	62	99	44.5
		%	28.0	22.5	24.3	
	단순직	응답	41	74	115	-
		%	31.1	26.8	28.2	
	노점·좌판	응답	4	11	15	-
		%	3.0	4.0	3.7	
	기타	응답	9	12	21	-
		%	6.8	4.3	5.1	
전 체	응답	132	276	408	-	
	%	100.0	100.0	100.0	100.0	

p=.117

실직 장애우의 실직 전 직종은 대개 가능직 및 단순직이 대부분이었다. 52.5%의 실직장애우가 이에 해당하며 일반실업자 조사에서는 44.5%가 이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전문·기술자 및 행정직에 종사한 장애우는 월등히 적고 사무직도 비중이 적다는 측면에서는 예외가 아니다.

⑥ 실직전 업종

〈표3-19〉 실직전 업종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98 실업자 조 사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실직전 업 종	서비스업	응답	39	74	113	-
		%	50.8	52.7	52.1	74.4
	제조업	응답	62	110	172	-
		%	48.4	39.7	42.5	24.6
	농림어업	응답	1	21	22	-
		%	0.8	7.6	5.4	1.0
전 체	응답	128	277	405	-	
	%	100.0	100.0	100.0	100.0	

p=.015

실직전 업종의 측면에서는 장애우의 경우 상대적으로 광공업 비중이 높고 일반 실업자의 경우 서비스업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⑦ 실직전 직장의 규모

〈표3-20〉 실직전 직장의 규모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98 실업자 조 사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실직전 사업장 규모	5인미만	응답	53	96	149	-
		%	40.5	36.1	37.5	27.2
	5-9인	응답	20	48	68	-
		%	15.3	18.0	17.1	18.3
	10-29인	응답	27	53	80	-
		%	20.6	19.9	20.2	19.6
	30-99인	응답	22	32	54	24.0
		%	16.8	12.0	13.6	
	100-299인	응답	6	16	22	
		%	4.6	6.0	5.5	
	300인 이상	응답	3	21	24	-
		%	2.3	7.9	6.0	10.5
	전 체	응답	131	266	397	-
		%	100.0	100.0	100.0	100.0

p=.205

실직전 종사하던 사업장의 규모는 장애우의 경우 5인미만의 영세작업장에 37.5%, 5-30인규모의 중소기업에 37.3%,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 6.0%로 나타난다. 이는 일반실업자에 비하여 영세기업에 더 많이, 그리고 대기업에는 더 적게 취업한 것으로 비교된다.

⑧ 실직전 직장의 수입

〈표3-21〉 실직전 직장의 수입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평균 수입	30만원 미만	응답	9	33	42
		%	7.1	12.9	11.0
	30-50만원 미만	응답	37	43	80
		%	29.1	16.8	20.9
	50-100만원 미만	응답	55	114	169
		%	43.3	44.5	44.1
	100-150만원 미만	응답	21	38	59
		%	16.5	14.8	15.4
	150-200만원 미만	응답	5	16	21
		%	3.9	6.3	5.5
	200-250만원 미만	응답	-	4	4
		%	-	1.6	1.0
	250만원 이상	응답	-	8	8
		%	-	3.1	2.1
전 체	응답	127	256	383	
	%	100.0	100.0	100.0	

p=.015

실직전 임금의 분포는 실직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임금의 구매력이 차이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그다지 유용성있는 의미를 주지 못하지만 평균임금수준은 721,527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⑨ 실직전 직장의 취업기간

〈표3-22〉 실직전 직장의 취업기간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취업 기간	1년미만	응답	19	19	38
		%	15.3	7.4	10.0
	1-5년미만	응답	67	93	160
		%	54.0	36.3	42.1
	5-10년미만	응답	15	53	68
		%	12.1	20.7	17.9
	10-15년미만	응답	10	39	49
		%	8.1	15.2	12.9
	15-20년미만	응답	4	17	21
		%	3.2	6.6	5.5
	20년이상	응답	9	35	44
		%	7.3	13.7	11.6
	전 체	응답	124	256	380
		%	100.0	100.0	100.0

p=.000

장애우실직자들이 실직전 이전직장에 근무한 평균기간은 85.9개월에 해당하므로 약 7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다시 몇가지 특성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는데,

- ▷ 성별 : 남 90.5개월, 여 65개월
- ▷ 실업유형 : IMF형 62.2개월, IMF이후 97.5개월
- ▷ 장애종류 : 지체 84.2개월, 청각 및 언어 : 98.0개월, 시각 100.8개월, 정신지체 31.0개월 등이다.

⑩ 실직 당시의 퇴직금 수령여부

〈표3-23〉 실직 당시의 퇴직금 수령여부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퇴직금 수령 여부	받음	응답	25	68	93
		%	19.8	25.2	23.5
	못받음	응답	12	8	20
		%	9.5	3.0	5.1
	없음	응답	43	91	134
		%	34.1	33.7	33.8
	해당사항없음	응답	46	103	149
		%	36.5	38.1	37.6
전 체	응답	126	270	396	
	%	100.0	100.0	100.0	

p=.038

실직장애우에 있어서 실직기간의 생활비로 충당될 수 있는 퇴직금 수령여부를 설문한 결과 퇴직금을 받은 자는 전체의 23.5%이며, 나머지는 못받았거나 아예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⑪ 실직 이유

〈표3-24〉 실직이유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실 직 전 상 태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임 금	비임금	
실 직 이유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	응답	29	39	68	50	18
		%	22.3	14.4	17.0	17.1	18.0
	해고, 권고 사직, 명퇴	응답	29	28	57	51	-
		%	22.3	10.3	14.2	17.3	-
	건강, 고령으로	응답	10	114	124	81	43
		%	7.7	42.1	30.9	27.6	43.0
	일거리 없음	응답	46	40	86	62	25
		%	35.4	14.8	21.4	21.1	25.0
	근무환경이 나빠서	응답	6	9	15	13	1
		%	4.6	3.3	3.7	4.4	1.0
	기타(교통사고 등장애발생시)	응답	10	41	51	37	13
		%	7.7	15.1	12.7	12.6	13.0
	전 체	응답	130	271	401	294	100
		%	100.0	100.0	100.0	100.0	100.0

p=.000/.006

실직이유로는 IMF 이전과 이후가 뚜렷이 대비되는 데 이전에는 건강이나 고령 등 대체적으로 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한 반면, 이후에는 일자리가 없거나 직장의 파산, 폐업, 그리고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양상이 완연하다. 또한 임금근로자는 주로 건강, 고령 등의 이유나 일거리가 없으므로 실직되었는데 이러한 이유는 비임금근로자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밖에도 남녀 모두 건강, 고령 등의 이유와 일자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나 여성의 경우 상대적 비중이 더욱 크게 드러난다.

② 장애로 인한 실직 여부

〈표3-25〉 장애로 인한 실직 여부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장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명예퇴직 여부	예	응답	13	12	25
		%	44.8	46.2	45.5
	아니오	응답	6	8	14
		%	20.7	30.8	25.5
	잘 모르겠다	응답	10	6	16
		%	34.5	23.1	29.1
전 체		응답	29	26	55
		%	100.0	100.0	100.0

p=.558

해고, 권고사직 또는 명예퇴직 장애우 가운데 장애 때문에 사유가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비율은 높아서 45.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IMF 이전과 이후간에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실직기간별로 대응시켜 보아도 장애로 인한 실직은 특별한 연관관계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3) 실직후 건강상태 및 가족생활

① 실직후 건강의 변화

〈표3-26〉 실직후 건강의 변화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실 직 후 건강 변화	매우그렇다	응답	27	100	127
		%	22.7	38.8	33.7
	그런편이다	응답	26	67	93
		%	21.8	26.0	24.7
	잘 모르겠다	응답	42	63	105
		%	35.3	24.4	27.9
	그렇지않다	응답	16	19	35
		%	13.4	7.4	9.3
전 혀 그렇지않다	응답	8	9	17	
	%	6.7	3.5	4.5	
전 체		응답	119	258	377
		%	100.0	100.0	100.0

p=.004

실직후 건강의 변화를 경험한 자들은 전체의 58.4%로서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의 13.8%와

대비된다. 이때 IMF 이전과 이후의 실직자 간에는 이전의 실직자가 건강의 악화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② 실직후 장애정도의 변화 여부

〈표3-27〉 실직후 장애정도의 변화 여부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실직후 장애정도 변화	매우그렇다	응답	19	74	93
		%	16.4	29.4	25.3
	그런 편이다	응답	23	61	84
		%	19.8	24.2	22.8
	잘 모르겠다	응답	26	57	83
		%	22.4	22.6	22.6
	그렇지않다	응답	34	40	74
		%	29.3	15.9	20.1
전 혀 그렇지않다	응답	14	20	34	
	%	12.1	7.9	9.2	
전 체		응답	116	252	368
		%	100.0	100.0	100.0

p=.006

실직후 장애정도에 있어서도 변화를 실감한 경우는 48.1%, 실감하지 않은 경우 29.3%로 나타나 장애 정도가 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경우도 IMF 이전의 실직자가 실직기간의 장기화로 더 악화된 상태로 반응된다.

③ 실직후 스트레스 심화 정도

〈표3-28〉 실직후 스트레스 심화 정도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실직후 심리적 스트레스 심화정도	매우그렇다	응답	65	133	198
		%	54.2	50.8	51.8
	그런 편이다	응답	40	90	130
		%	33.3	34.4	34.0
	잘 모르겠다	응답	13	27	40
		%	10.8	10.3	10.5
	그렇지않다	응답	0	7	7
		%	0.0	2.7	1.8
전 혀 그렇지않다	응답	2	5	7	
	%	1.7	1.9	1.8	
전 체		응답	120	262	382
		%	100.0	100.0	100.0

p=.483

실직에 따른 스트레스는 매우 현저히 나타나 긍정적인 반응은 85.8%인데 반해 느끼지 않는 경우는 3.6%에 불과하다. 또한 이 경우는 IMF 이전이나 이후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실직자 모두가 동일한 정도의 심각한 반응을 보인다할 수 있다.

④ 실직후 생계유지의 어려움 정도

〈표3-29〉 실직후 생계유지의 어려움 정도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실직 후 생계유지 어려움 정도	매우그렇다	응답	84	185	269
		%	66.1	68.0	67.4
	그저 그런 편이다	응답	33	72	105
		%	26.0	26.5	26.3
	잘 모르겠다	응답	9	13	22
		%	7.1	4.8	5.5
	그렇지않다	응답	1	1	2
		%	0.8	0.4	0.5
전 혀 그렇지않다	응답	0	1	1	
	%	0.0	0.4	0.3	
전 체	응답	127	272	399	
	%	100.0	100.0	100.0	

p=.798

당연히 실직후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타격은 생계유지이며 조사결과는 이를 확인하여 주고 있다. 즉, 전체 응답자의 93.7%에 해당하는 장애우가 어려움정도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 경우도 IMF 이전과 이후의 실직자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⑤ 실직후 부채 증가의 정도

〈표3-30〉 실직후 부채 증가의 정도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실직 후 부채증가 정도	매우그렇다	응답	37	64	101
		%	32.2	26.4	28.3
	그저 그런 편이다	응답	27	75	102
		%	23.5	31.0	28.6
	잘 모르겠다	응답	21	51	72
		%	18.3	21.1	20.2
	그렇지않다	응답	20	43	63
		%	17.4	17.8	17.6
전 혀 그렇지않다	응답	10	9	19	
	%	8.7	3.7	5.3	
전 체	응답	115	242	357	
	%	100.0	100.0	100.0	

p=.172

부채의 정도 역시 56.9%에 해당하는 장애우가 증가되는 상태에 있으며 IMF 이전과 이후사이에 반응상 유의적인 차이는 없다.

⑥ 부부 또는 가족 관계의 악화 정도

〈표3-31〉 부부 또는 가족 관계의 악화 정도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부부 가족 관계 악화 정도	매우그렇다	응답	25	40	65
		%	23.1	17.8	19.5
	그저 그런 편이다	응답	26	57	83
		%	24.1	25.3	24.9
	잘 모르겠다	응답	33	56	89
		%	30.6	24.9	26.7
	그렇지않다	응답	17	50	67
		%	15.7	22.2	20.1
전 혀 그렇지않다	응답	7	22	29	
	%	6.5	9.8	8.7	
전 체	응답	108	225	333	
	%	100.0	100.0	100.0	

p=.350

부부관계 또는 가족관계 상의 부정적인 변화도 비교적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44.4%가 악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는 28.8%이다. 이 역시 IMF 이전과 이후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다.

⑦ 자녀 교육비 감소 정도

〈표3-32〉 자녀교육비 감소 정도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자녀 교육비 감소 정도	매우그렇다	응답	36	74	110
		%	35.0	35.4	35.3
	그저 그런 편이다	응답	25	66	91
		%	24.3	31.6	29.2
	잘 모르겠다	응답	18	29	47
		%	17.5	13.9	15.1
그렇지않다	응답	19	22	41	
	%	18.4	10.5	13.1	
전 혀 그렇지않다	응답	5	18	23	
	%	4.9	8.6	7.4	
전 체		응답	103	209	312
		%	100.0	100.0	100.0

p=.798

실직 장애우 가정의 자녀교육비는 감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응답자의 반응도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 전체의 64.5%가 자녀 교육비를 줄이며 현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는 반응은 20.5%에 불과하다. IMF 이전과 이후의 반응상 유의적 차이가 없음은 동일하다.

⑧ 실직후 가족의 건강악화여부

〈표3-33〉 실직후 가족의 건강악화 여부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실직후 아픈가족 발생유무	예	응답	49	125	174
		%	39.2	48.4	45.4
	아니오	응답	76	133	209
		%	60.8	51.6	54.6
전 체		응답	125	258	383
		%	100.0	100.0	100.0

p=.55

실직후 가족구성원의 건강이 악화되는가를 물어본 설문에서 응답자의 절반인 45.4%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므로 실직장애우 가정의 의료보장이 절실함도 나타난다. IMF 이후 실직장애우가정에서는 실직기간이 짧은 관계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⑨ 건강상태 및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변수들

가. 성별

남녀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건강이나 가족생활에 특별한 차이를 유발하지 않는다. 다만 실직후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체감하는 면에서 가구주인 남성이 더 심각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연령

연령변수는 건강상태나 가족생활에 대한 실직의 영향력을 다르게 반응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실직후 건강변화, 장애정도 변화, 생계유지의 어려움, 부채증가 정도 등의 측면에서 악화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학력

학력변수는 고졸과 전문대졸 이상의 두집단간에 뚜렷한 대조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흥미롭다. 즉 모든 측면에서 고졸 학력의 실직장애우는 상대적으로 가장 덜 악화된 상황으로 나타내고 있으나 반대로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소유자는 상황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

라. 가구주 여부

가구주인 경우는 가구원의 경우보다도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느낀다고 응답하고 있다.

마. 실직기간

실직기간에 있어서는 6개월미만의 실직 초기자들은 아직 자신의 건강이나 장애정도, 스트레스 정도, 생계유지상의 어려움 정도, 부채증가 정도에 대하여 심각한 변화를 호소하지만 오히려 1년에서 5년사이의 집단들은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덜 하고 5년 이후의 중장기실업자가 되었을 때 다시 그 심각성을 나타내는 반응으로 요약할 수 있다.

4) 실업 하의 생활 실태

① 생계수단

〈표3-34〉 실업하의 생계수단

구 분	현재의 생계수단이 됨		해 당 없 음	
	명	%	명	%
가. 본인의 근로소득	111	16.5	563	83.5
나. 타가구원의 근로소득	185	27.4	489	72.6
다. 퇴직금 또는 퇴직수당	16	2.4	658	97.6
라. 저축	83	12.3	591	87.7
마. 친지의 지원	136	20.2	538	79.8
바. 종교 및 사회기관 도움	110	16.3	584	83.7
사. 이자 등 재산소득	13	1.9	661	98.1
아. 실업급여	29	4.3	645	95.7
자. 빚을 얻어	109	16.2	565	83.8
차. 이웃의 도움	73	10.8	601	89.2
카. 정부보조금	352	52.2	322	47.8
타. 정부의 대부사업	21	3.1	653	96.9
파. 공공근로사업	61	9.1	613	90.9
하. 직업훈련수당	11	1.6	663	98.4

주) 복수응답을 허용함.

실업장애우에게 있어서 현재의 소득중단 또는 소득격감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정부의 보조금이고 다음으로 타가구원의 근로소득, 친지의 도움, 자신의 근로소득 순이다. 특히 저축이나 재산소득 등이 전혀 가능하지 못하다는 점이 현재의 실직장애우들에게 있어서 지속적인 실적상황이 벌어진다면 생활의 지지수단이 대단히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생활보호대상자가 58.4%인 상황에서 정부보조금이 생활유지수단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어졌지만, 여타 정부의 빈민계층 대응책들이 과연 실제 수혜자들에게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 지가 관건인 하나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의 보조금, 대부사업, 공공근로사업 및 직업훈련수당 등을 수혜하고 있는 저소득 실직장애우의 규모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② 정부지원사업 적용·미적용 계층의 실체

〈표3-35〉 성별 정부지원사업 적용·미적용 계층의 실체

항 목			유형별		성 별		전 체
			응답	%	남	여	
정부로부터 1개 이상 지원	미적용	응답	207	62	269		
		%	40.1	39.2	39.9		
미적용	적용	응답	309	96	405		
		%	59.9	60.8	60.1		
전 체	응답	응답	516	158	674		
		%	100.0	100.0	100.0		

p=.884

결국 현재 저소득 실적 장애인의 60.1%만이 정부가 제시하는 사업으로부터 생활유지에 필요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형편이고 나머지 39.9%는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중 남성은 전체의 40.1%, 여성은 전체의 39.2%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두집단간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갖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3-36〉 연령별 정부지원사업 적용·미적용 계층의 실체

항 목			유형별		연 령						전 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정부로부터 1개 이상 지원	예	응답	1	27	62	70	59	45	264		
		%	100.0	55.1	39.5	30.7	39.9	52.3	39.5		
미적용	아니오	응답	0	22	95	158	89	41	405		
		%	0.0	44.9	60.5	69.3	60.1	47.7	60.5		
전 체	응답	응답	1	49	157	228	148	86	669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001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20대의 과반수이상, 60대의 과반수가 각기 미적용계층으로 분류된

다. 상대적으로 30,40,50대 계층은 적용범위가 더 넓다. 따라서 연령별로는 적용범위간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차이가 있다.

〈표3-37〉 거주지 특성별 정부지원사업 적용·미적용 계층의 실체

항 목			유형별		거 주 지 특 성			전 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산촌	
정부로부터 1개 이상 지원	미적용	응답	125	91	52	268		
		%	39.4	37.9	45.2	39.9		
미적용	적용	응답	192	149	63	404		
		%	60.6	62.1	54.8	60.1		
전 체	응답	응답	317	240	115	672		
		%	100.0	100.0	100.0	100.0		

p=.411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산촌 등 거주지 특성의 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미지원계층이 더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통계학적으로 볼 때 지역적 특성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표3-38〉 장애유형별 정부지원사업 적용·미적용 계층의 실체

항 목			유형별		장 애 유 형				전 체
					지 체	청각·언어	시 각	정신지체	
정부로부터 1개 이상 지원	미적용	응답	190	21	41	15	267		
		%	37.8	48.8	40.6	60.0	39.7		
미적용	적용	응답	313	22	60	10	405		
		%	62.2	51.2	59.4	40.0	60.3		
전 체	응답	응답	503	43	101	25	672		
		%	100.0	100.0	100.0	100.0	100.0		

p=.085

장애유형별로 볼 때는 지체장애우 계층이 가장 낮은 적용율을 보인다. 반면에 정신지체는 적용받는 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데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표3-39〉 가구주여부별 정부지원사업 적용·미적용 계층의 실체

항 목			유형별		가 구 주 여 부		전 체
					가구주	가구원	
정부로부터 1개 이상 지원	미적용	응답	159	107	266		
		%	35.5	48.6	39.8		
미적용	적용	응답	289	113	402		
		%	64.5	51.4	60.2		
전 체	응답	응답	448	220	668		
		%	100.0	100.0	100.0		

p=.103

조사에 의하면 저소득 실직 장애인 가구주 가운데 35.5%는 정부의 주요사업으로부터 보호혜택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도 좋다.

〈표3-40〉 실직자 유형별 정부지원사업 적용·미적용 계층의 실체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 실직자	
정부로부터 1개 이상 지원	미적용	응답	61	104	165	
		%	45.5	37.1	39.9	
전 체	적용	응답	73	176	249	
		%	54.5	62.9	60.1	
전 체		응답	134	280	414	
		%	100.0	100.0	100.0	

p=.103

IMF 외환 위기를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눌 때 IMF형 실직자 중에서 45.5%, IMF 이전 실직자의 37.1%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 않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을 지닐 만큼 다른 구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표3-41〉 개인소득별 정부지원사업 적용·미적용 계층의 실체

항 목			유형별	현 개 인 소 득						전 체
				없음	10만원 미만	10-30만원미만	30-50만원 미만	50-70만원 미만	70-90만원 미만	
정부로부터 1개 이상 지원	미적용	응답	118	40	49	28	13	8	4	260
		%	63.1	35.1	22.0	30.8	40.6	80.0	100.0	39.3
전 체	적용	응답	69	74	174	63	19	2	0	401
		%	36.9	64.9	78.0	69.2	59.4	20.0	0.0	60.7
전 체		응답	187	114	223	91	32	10	4	661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000

현재의 정부사업은 저소득실직장애우 가운데 소득이 전혀 없는 자중 63.1%에게 아무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1만-50만에 해당하는 계층에게 지원이 가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실제 가장 혜택을 받아야 할 계층이 누락된다는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표3-42〉 총가구소득별 정부지원사업 적용·미적용 계층의 실체

항 목			유형별	현 총 가 구 소 득						전 체
				30만원 미만	30-50만원미만	50-100만원미만	100-150만원미만	150-200만원미만	200만원이상	
정부로부터 1개 이상 지원	미적용	응답	116	76	37	10	1	1	241	
		%	32.3	45.2	51.4	90.9	100.0	100.0	39.4	
전 체	적용	응답	243	92	35	1	0	0	371	
		%	67.7	54.8	48.6	9.1	0.0	0.0	60.6	
전 체		응답	359	168	72	11	1	1	61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000

개인소득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가구소득에 있어서도 30만원 이하의 가구 중 32.3%가 지원대책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30만-150만원 사이에 있는 자들이 구성비상으로는 상대적으로 많이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실직자의 현재 개인 총소득

〈표3-43〉 실직자의 현재 개인 총소득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현재 개인 소득	없음	응답	38	70	79	187	
		%	28.8	25.3	31.4	28.3(28.3)	
	10만원미만	응답	21	49	44	114	
		%	15.9	17.7	17.5	17.2(45.5)	
	10-30만원미만	응답	38	98	87	223	
		%	28.8	35.4	34.5	33.7(79.2)	
	30-50만원미만	응답	24	39	28	91	
		%	18.2	14.1	11.1	13.8(93.0)	
50-70만원미만	응답	9	15	8	32		
	%	6.8	5.4	3.2	4.8(97.8)		
70-90만원미만	응답	1	5	4	10		
	%	0.8	1.8	1.6	1.6(99.4)		
90만원이상	응답	1	1	2	4		
	%	0.8	0.4	0.8	0.6(100.0)		
전 체		응답	132	277	252	661	
		%	100.0	100.0	100.0	100.0	

p=.603,

주: ()안은 누적비중임.

저소득 실업 장애우에 있어서 월10만원정도만 자기소득이 확보되는 자는 전체 응답자의 45.5%에 이른다. 조금 확대하여 50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하면 전체 응답자의 93.0%가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저소득상태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사회로부터의 원조는 이 시점에

서의 절실한 과제가 될 것이다.

현재의 개인소득은 성별, 학력별, 연령별, 장애등급별, 가구주 유무 등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실직기간별로는 실직기간이 길수록 개인소득이 더욱 하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④ 실업자의 가구 총소득

〈표3-44〉 실업자의 가구 총소득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현 재 개 인 소득	30만원미만	응답	54	151	154	359
		%	45.4	58.5	65.5	58.5(58.5)
	30-50만원 미 만	응답	41	70	57	168
		%	34.5	27.1	24.3	27.5(86.0)
	50-100만원 미 만	응답	22	31	19	72
		%	18.5	12.0	8.1	11.8(97.8)
	100-150만원 미 만	응답	2	5	4	11
		%	1.7	1.9	1.7	1.8(99.6)
	150-200만원 미 만	응답	0	1	0	1
		%	0.0	0.4	0.0	0.2(99.8)
	200만원이상	응답	0	0	1	1
		%	0.0	0.0	0.4	0.2(100.0)
	전 체	응답	119	258	235	612
		%	100.0	100.0	100.0	100.0

p=.043,
주 : ()안은 누적비중임

가구총소득 역시 저수준에 머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가구소득이 30만원을 넘지 않는 가구의 비중이 58.5%, 50만원을 넘지않는 가구가 86.0%에 머문다.

⑤ 실업자의 가구소득 감소액 규모

〈표3-45〉 실업자의 가구소득 감소액 규모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소 득 감 소	30만원 미만	응답	22	39	49	110
		%	19.6	19.7	49.5	26.9
	30-50만원 미 만	응답	23	39	16	78
		%	20.5	19.7	16.2	19.1
	50-100만원 미 만	응답	44	78	19	141
		%	39.3	39.4	19.2	34.5
	100-150만원 미 만	응답	20	24	11	55
		%	17.9	12.1	11.1	13.4
	150-200만원 미 만	응답	2	6	3	11
		%	1.8	3.0	3.0	2.7
	200만원이상	응답	1	12	1	14
		%	0.9	6.1	1.0	3.4
	전 체	응답	112	198	99	409
		%	100.0	100.0	100.0	100.0

p=.000

가구소득의 감소액은 한가구의 경제적 타격 정도를 짐작하게 한다. 조사결과의 분석에 의하면 평균감소액은

- ▷ IMF 형 실직자 584천원
 - ▷ IMF 이전 실직자 660천원
 - ▷ 만성실업자 403천원
- 으로 계산된다.

⑥ 최저생계비 규모

〈표3-46〉 최저생계비 규모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소 득 감 소	30만원 미만	응답	6	16	18	40
		%	4.7	6.0	7.6	6.3
	30-50만원 미만	응답	26	57	57	140
		%	20.2	21.3	24.1	22.1
	50-100만원 미만	응답	69	154	140	363
		%	53.5	57.7	59.1	57.3
	100-150만원 미만	응답	24	31	16	71
		%	18.6	11.6	6.8	11.2
	150-200만원 미만	응답	3	8	2	13
		%	2.3	3.0	0.8	2.1
	200만원이상	응답	1	1	4	6
		%	0.8	0.4	1.7	0.9
	전 체	응답	129	267	237	633
		%	100.0	100.0	100.0	100.0

p=.053

최저생계비는

- ▷ IMF 형 실직자의 경우 평균 683천원
- ▷ IMF 이전의 실직자의 경우 평균 628천원
- ▷ 만성실업자의 경우 평균 576천원

으로 제시되었다. 응답자의 과반수는 50~100만원 미만대에 걸쳐 최저 생계비를 생각하고 있으며 30~50만원 미만에도 22.1%가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만성실업자는 낮은 최저생계비 수준을 나타낸다.

〈표3-47〉 총가구소득별 최저생계비

구 분	최 저 생 계 비						전 체	
	30만원 미만	30-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총가 구 소 득	30만원 미만	27	105	193	16	3	2	346 (319)
	30-50만원 미만	3	17	116	25	1	2	160 (144)
	50-100만원 미만	0	3	36	22	8	0	69 (30)
	100-150만원 미만	1	2	1	4	1	2	11 (3)
	150-200만원 미만	0	0	1	0	0	0	1 (0)
	200만원 이상	0	0	0	1	0	0	1 (0)
	전 체	31	127	347	68	13	6	592 (496)

주 : ()안의 수치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응답자수를 나타낸다.

한편, 총가구소득 수준이 명백히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보면 위의 표에서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이 그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현재 3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자는 응답자 346명 중 92.2%에 해당하는 319명, 30~5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자는 160명중 90%인 144명 등 전체 응답자 592명 중 83.4%인 496명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구직활동의 실태

① 구직활동 희망 여부

〈표3-48〉 구직활동 희망 여부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일자리 를 원하는가	예	응답	119	219	137	475
		%	89.5	79.1	53.9	71.5
원하는가	아니오	응답	14	58	117	189
		%	10.5	20.9	46.1	28.5
전 체	응답	133	277	254	664	
	%	100.0	100.0	100.0	100.0	

p=.000

조사결과에 따르면 만성실업자의 46.1%, IMF이전실업자의 20.9%, IMF형실업자의 10.5%는 이미 실망실업자 상태에 빠진 것으로 드러난다. 특히 실직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실망실업자로 전락하는 자들이 늘어나는 IMF형 실직자의 상태를 정확히 읽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대안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만성실업자 가운데에서도 53.9%에 해당하는 인원은 여전히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② 구직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

〈표3-49〉 구직희망 이유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일자리를 원하는 이유	본인이	응답	48	77	14	139
	입을 얹어	%	40.7	34.8	10.1	29.1
	배우자,	응답	3	12	20	35
	가족의 실직	%	2.5	5.4	14.5	7.3
	소비지출이	응답	32	66	58	156
	늘어나서	%	27.1	29.9	42.0	32.7
	빛때문	응답	13	32	21	66
		%	11.0	14.5	15.2	13.8
	본인의	응답	10	16	11	37
	학비, 용돈	%	8.5	7.2	8.0	7.8
기 타	응답	12	18	14	44	
	%	10.2	8.11	0.1	9.2	
전 체	응답	118	221	138	477	
	%	100.0	100.0	100.0	100.0	

p=.000

구직을 희망하는 사유로서는 실직 유형에 따라 다른데 만성실업자는 만성적인 실업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에 대한 압박감이 크므로 취업에 대한 욕구가 강하며 실직자의 경우는 자신이 생산 현장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의식되는 가운데 역시 늘어나는 가계의 소비지출 압박감이 작용한다. 따라서 만성실업자와 실직자 간에는 구분되는 특징이 엿보이나 실직자집단 안에서는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③ 구직을 원치 않는 이유

구직을 원치 않는 사유로는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가 가장 많아 전체의 57.5%에 이른다. 또한 건강악화라는 요인도 많이 지적되므로 이러한 실직장애우 개인적 상황, 특히 장애정도의 진전 및 건강악화 등의 사유가 심화되지 않도록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표3-50〉 구직을 원치 않는 이유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이유	장애정도가 심해서	응답	7	34	64	105
		%	50.0	59.6	57.7	57.7
	취업가능성 없음	응답	2	10	19	31
		%	14.3	17.5	17.1	17.0
	건강악화	응답	4	13	22	39
		%	28.6	22.8	19.8	21.4
기 타	응답	1	0	6	7	
	%	7.1	0.0	5.4	3.8	
전 체	응답	14	57	111	182	
	%	100.0	100.0	100.0	100.0	

p=.669

④ 구체적인 구직활동 유형

〈표2-51〉 구체적인 구직활동 유형

구 분	이용한 적 있음		이용한 적 없음	
	명	%	명	%
가. 실직자모임터 방문	127	18.8	547	81.2
나. 친지나 친구와 접촉	206	30.6	468	69.4
다. 공공직업안정기관 접촉	215	31.9	459	68.1
(노동부인터넷사이트)	(16)	(2.4)	(199)	(97.6)
(노동부 지방사무소)	(96)	(14.2)	(119)	(85.8)
(인력은행)	(53)	(7.9)	(162)	(92.1)
(고용안정센터)	(76)	(11.3)	(139)	(88.7)
(시군구 취업센터)	(150)	(22.3)	(65)	(77.7)
(산업인력관리공단)	(30)	(4.5)	(185)	(95.5)
(장애인고용촉진공단)	(214)	(31.8)	(1)	(68.2)
라. 민간직업안내소 접촉	75	11.1	599	88.9
마. 사업체 직접 연락	135	20.0	539	80.0
바. 장애인단체 등 방문	281	41.7	393	58.3
사. 장애인재용박람회 방문	107	15.9	567	84.1
아. 신문 등의 구인광고	107	15.9	567	84.1

친지나 친구에게 의뢰하는 등의 사적인 방법을 제외하면 공공의 고용정보제공기관 중에는 장애인단체,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시군구 취업센터 등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곳이다.

⑤ 구직활동 시의 가장 어려운 점

〈표3-52〉 구직활동시 어려운 점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구직 활동시 가장 어려운 점	적당한 일거리	응답	61	84	37	182
	부 재	%	51.3	34.7	24.7	35.6
	취업 정보의	응답	5	11	7	23
	부 재	%	4.2	4.5	4.7	4.5
	학력,기능,자격	응답	17	18	24	59
	이 부족함	%	14.3	7.4	16.0	11.5
	장 애	응답	32	111	69	212
		%	26.9	45.9	46.0	41.5
	적은 보수	응답	0	4	2	6
		%	0.0	1.7	1.3	1.2
	고 령	응답	0	2	3	5
		%	0.0	0.8	2.0	1.0
	성 차 별	응답	4	10	6	20
		%	3.4	4.1	4.0	3.9
기 타	응답	0	2	2	4	
	%	0.0	0.8	1.3	0.8	
전 체	응답	119	242	150	511	
	%	100.0	100.0	100.0	100.0	

p=.002

구직활동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일반적으로는 장애를 지닌 것 자체와 적절한 일거리가 없는 것이지만, 특히 노동능력이 상대적으로 큰 IMF형 실직자에게는 적당한 일거리의 부재가 가장 어려운 점으로 나타난다.

⑥ 취업을 원하는 직종

〈표3-53〉 취업을 원하는 직종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희 망 직 종	전문가, 기술자	응답	7	21	12	40
		%	5.2	7.5	4.6	5.9
	사무직	응답	12	24	13	49
		%	9.0	8.6	5.0	7.3
	서비스 판매직	응답	21	40	23	84
		%	15.7	14.3	8.8	12.5
	농,어업	응답	0	3	0	3
		%	0.0	1.1	0.0	0.4
	기계조립, 기능직	응답	23	37	18	78
		%	17.2	13.2	6.9	11.6
	단순노무	응답	16	40	13	69
		%	11.9	14.3	5.0	10.2
	노점, 직판	응답	1	1	3	5
		%	0.7	0.4	1.2	0.7
	관리행정	응답	2	3	2	7
		%	1.5	1.1	0.8	1.0
	이무거나	응답	15	17	16	48
		%	11.2	6.1	6.2	7.1
	무응답	응답	37	94	160	291
		%	27.6	33.6	61.5	43.2
전 체	응답	134	280	260	674	
	%	100.0	100.0	100.0	100.0	

p=.000

희망직종을 언급하지 않은 실망실업자를 제외하면 서비스 판매직과 기계조립·기능직이 가장 많은 상태로 나타난다.

⑦ 희망업종

〈표3-54〉 희망업종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희 망 업 종	서비스업	응답	36	89	52	168
		%	26.9	31.9	20.0	24.9
	제 조 업	응답	38	63	26	127
		%	28.4	22.5	10.0	18.8
	농림어업	응답	1	3	0	4
		%	0.7	1.1	0	0.6
	아무거나	응답	22	30	22	74
		%	16.4	10.7	8.5	11.0
	무응답	응답	37	95	160	292
		%	27.6	33.9	61.5	43.3
전 체	응답	134	280	260	674	
	%	100.0	100.0	100.0	100.0	

p=.000

실직장애우가 재취업할 시는 서비스업종을 가장 원하고 있으나 아무거나 가리지 않는다는 응답도 설문여성자 전체의 11.0%에 이르렀고 아예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⑧ 희망 종사형태

〈표3-55〉 희망종사형태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희 망 종 사 형태	정규직	응답	73	138	62	273
		%	54.5	49.3	23.8	40.5
	임시직	응답	2	2	2	6
		%	1.5	0.7	0.8	0.9
	일용직	응답	9	19	12	40
		%	6.7	6.8	4.6	5.9
	자영업자	응답	6	20	14	40
		%	4.5	7.1	5.4	5.9
	무급가족종사자	응답	0	0	1	1
		%	0.0	0.0	0.4	0.1
아무거나	응답	7	8	9	24	
	%	5.2	2.9	3.5	3.6	
무응답	응답	37	93	160	290	
	%	27.6	33.2	61.5	43.0	
전 체	응답	134	280	260	674	
	%	100.0	100.0	100.0	100.0	

p=.000

실직 장애우는 당연히 향후 재고용될 시에는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있다.

⑨ 희망 보수 수준

〈표3-56〉 희망보수 수준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희 망 보 수	30만 미만원	응답	0	1	3	4
		%	0.0	0.5	2.4	0.9
	30-50만원 미만	응답	3	15	11	29
		%	2.6	7.2	8.7	6.4
	50-100만원 미만	응답	79	146	91	316
		%	67.5	70.2	72.2	70.1
	100-150만원 미만	응답	33	36	20	89
		%	28.2	17.3	15.9	19.7
	150-200만원 미만	응답	2	5	0	7
		%	1.7	2.4	0.0	1.6
200만원이상	응답	-	5	1	6	
	%	-	2.4	0.8	1.3	
전 체	응답	117	208	126	451	
	%	100.0	100.0	100.0	100.0	

p=.020

실업장애우가 원하는 임금의 수준은 평균 747천원이며 유형별로는

- ▷ IMF형 실직자 780천원
- ▷ IMF 이전실직자 763천원
- ▷ 만성실업자 690천원

등으로 나타난다.

6)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반응 및 효과

(1) 생활보호사업

① 생활보호사업에 대한 인지도